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재 결

사 건 2022-13676 새뜰마을사업 급수공사비 반환 등 이행청구
청 구 인
피 청 구 인 농림축산식품부장관
심 판 청 구 일 2022. 8. 22.

주 문

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.

청 구 취 지

피청구인이 2022. 6. 28. 상수도사업소를 통해 청구인에게 한 급수공사비 납부처분을 이행하고 청구인에게 반환한다.

이 유

1. 사건개요

충청북도 옥천군수는 2022. 6. 28. 청구인에게 급수공사비 48만 1,840원을 2022. 7. 27.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다.

2. 청구인 주장

새뜰마을사업을 실시하면서 상수도 계량기 및 계량기 통 등의 비용(급수공사비)을 원주민이 아니라 이주민이라는 이유로 개인에게 부담시켰다. 수도계량기는 수도요금 납부를 위해 필요한 것이므로 수도요금을 청구하는 쪽에서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인바, 납부한 급수공사비는 반환되어야 한다.

3.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

가. 「행정심판법」 제17조제1항에 따르면, 행정심판은 처분을 한 행정청(의무이행심판의 경우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)을 피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.

나. 청구인은 수도계량기 설치 등의 급수공사비는 수도요금의 청구 주체가 부담하여야 한다며 이미 납부한 급수공사비를 반환해 달라는 취지로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보이나, 급수공사비의 납부고지를 한 행정청은 옥천군수로서,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급수공사비의 납부고지를 하였다거나,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급수공사비를 납부한 후 납부한 공사비의 반환을 신청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바, 피청구인은 처분을 한 행정청 또는 청구인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, 이 사건 심판청구는 피청구인 적격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.

4. 결 론

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.

2022. 9. 20.

중앙행정심판위원회

